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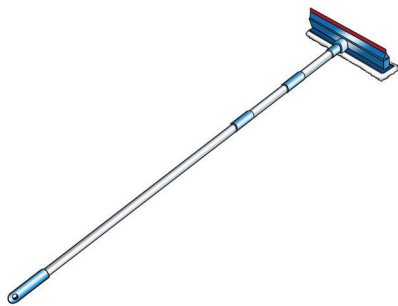


청소용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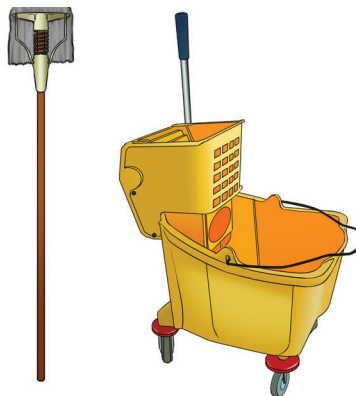


청소용구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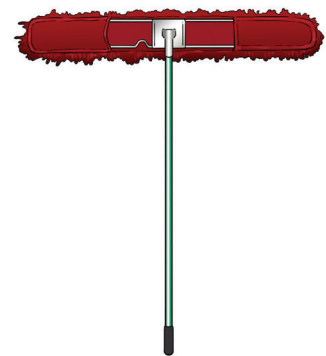
- 청소용구는 건물 내 복도, 사무실, 화장실 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작업자가 사용하는 빗자루, 마포 걸레, 마포탈수기, 진공청소기 등의 도구를 말한다.
- 청소용구를 화장실, 복도바닥 등에 임의로 방치하여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지는 전도재해 위험성이 가장 크다.



유리청소기, 마포자루



마포 탈수기



기름걸레



빗자루, 솔



진공청소기



바닥 광택기

건물 내 사용되는 청소용구

주요 작업내용

- 바닥의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려 빗자루로 쓸거나 진공청소기 사용
- 세면대, 거울, 천장의 물기를 걸레로 청소
- 바닥의 물기를 마포걸레로 닦고, 걸레의 물기를 마포탈수기로 제거
- 바닥의 이물질 및 찌든 때를 락스 등의 세제류(산성세제 등)를 사용하여 제거
- 사무실, 복도 바닥의 왁스작업을 위하여 바닥광택기 사용





주요 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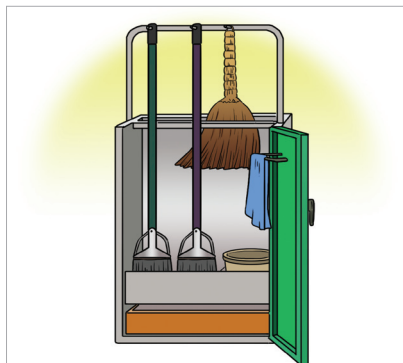
- ✔ 바닥 물기 제거 중 남아 있는 바닥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짐
- ✔ 청소도구를 정리정돈하지 않아 걸려 넘어짐
- ✔ 거울 · 유리창 청소 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미끄러짐
- ✔ 진공청소기 · 바닥광택기 전선에 걸려 넘어짐
- ✔ 락스 등의 화학물질 사용 중 신체에 접촉

안전대책

- 개인보호장구(작업모, 미끄럼방지 장화, 보안경, 보호장갑)를 착용
- 바닥 청소 시 청소용구(마포걸레 등)의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고,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
- 청소 후 청소용구는 반드시 전용보관함에 넣어 정리정돈 된 상태로 보관 · 사용
- 청소용구 등 운반물 이동 시 전용대차를 사용
- 진동이 적은 진공청소기 및 바닥광택기를 사용하고 전선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 철저
- 전기기구의 코드는 접지형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감전위험 예방
- 세제류 용기 등에 경고표시 및 작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비치
- 락스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손목 및 팔까지 보호되는 보호장갑 착용
- 중량물 운반 시 이동대차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운반
- 거울 · 유리창 등 높은 곳의 청소 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



미끄럼주의 표지판 설치



청소 용구 정리정돈



운반물 이동 시 전용대차 사용





재해사례 : 화장실 청소 중 화학물질에 피부 접촉

개요

○○○건물 내에서 화장실의 묵은 때를 걸레를 이용하여 산성약품으로 제거하다 코팅장갑 틈으로 약품이 흘러들어 손목에 피부손상을 입음



발생원인

- 구멍이 난 작업장갑 착용
-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미부착
-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교육 미실시

예방대책

- 손목 및 팔까지 보호되는 보호구 착용
- 보관용기에 경고표지판 부착
-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교육



안전수칙

작업 전

-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비치 및 교육을 실시한다.
- 화학물질을 별도용기에 담아 사용할 경우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.
- 작업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한다.
- 물이나 왁스청소 등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운지 사전에 확인한다.
- 바닥에 고여 있는 물기를 제거한다.
- 미끄럼방지 작업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
- 청소작업구역에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한다.
-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.

작업 중

- 바닥 청소 시 청소용구(마포걸레 등)의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사용한다.
- 청소용구 또는 중량물 등의 운반 시 전용대차를 사용한다.
- 진공청소기, 바닥광택기 등은 진동이 적은 설비를 사용한다.
- 전기기구 사용 시 전선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실시한다.
- 전기기구의 코드선은 접지형을 사용한다.
- 전기콘센트는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한다.
- 안전한 작업 및 통행을 위한 조도를 확보한다.
- 유리창, 거울 등 높은 곳의 청소 시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한다.
- 청소 후 청소용구는 반드시 별도장소에 보관하여 정리정돈을 실시한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· 비치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3조 (전도의 방지) – 제4조 (작업장의 청결)
 -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- KOSHA GUIDE G-27-2012 청소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

